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되는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관청의 협회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협회의 설립)”을 “(협회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협회 중앙회, 시·도회, 지회 설치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감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교육에 관한 사항

8.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④협회의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32조제2항 중 “지부 또는”을 “시·도회 또는”으로, “지부는”을 “시·도회는”으로 한다.

제37조의2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41조에 따른 협회에 대한 제1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1조에 따른 <u>공인중개사협회</u> 에서 추천하는 사람	4. ----- <u>한국공인중개사협회</u>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u>공인중개사협회</u>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 ----- ----- ----- ----- <u>한국공인중개사협회</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장 <u>공인중개사협회</u>	제5장 <u>한국공인중개사협회</u>			
제30조(<u>협회의 설립</u>) ①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공인중개사협회</u> (이하 “ <u>협회</u> ”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	제30조(<u>협회의 설립 등</u>)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u>한국공인중개사협회</u> (이하 “ <u>협회</u> ”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협회 중앙회, 시·도회, 지회 설치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회원이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감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교육에 관한 사항
8.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신 설>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 (생략)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략)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

④협회의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회 또는 -----
----- 시·도회는 -----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u>인에 관한 사무</u> 10. 삭 제 11. ~ 13. (생 략) <u><신 설></u>	11. ~ 13. (현행과 같음) <u>14. 법 제41조에 따른 협회에 대</u> <u>한 제1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u> <u>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의</u> <u>통보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438